



법규관련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고시개정

-산업자원부-

리프트설치의 예외조항 등이 담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고시가
지난 1월 3일자로 개정됐다

산업자원부고시제1999-169호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(산업자원부고시 제1999-73호, '99.7.1.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0년 1월3일
산업자원부 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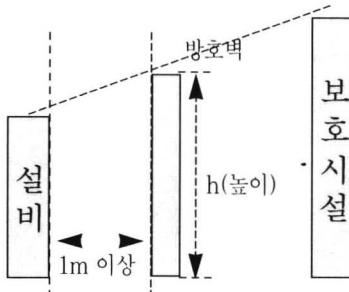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

제2-4-22조 제1호다목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안전밸브의 주밸브 및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(긴급용의 것을 제외한다)은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의 채움, 봉인, 조작금지 표시의 부착이나 조작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핸들을 제거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 내압·기밀시험용 밸브 등은 플리그 등의 마감 조치로 이중차단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것

제4-2-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그림1) 방호벽 설치예(측면도)



① 처리설비, 저장설비 및 충전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(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, 사업소경계가 바다·호수·하천·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을 경계로 본다)까지 1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주위의 방호벽(철근콘크리트제에 한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규정한 안전거리의 2분의1이상 유지할 수 있다.

②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[그림1] 및 [그림2]와 같이 방호벽의 크기는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방호벽 상단 및 양쪽끝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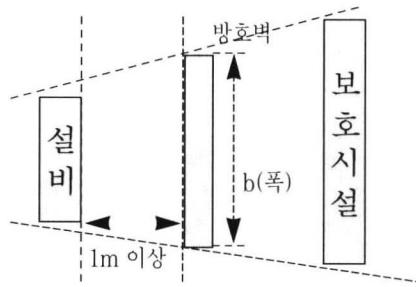
제4-2-9조 제5항중 “입·출구측”을 “입구측”으로 한다.

제8-2-2조 제8항제2호중 “맞는 구조로서 치수는 다음 그림에 의할 것”을 “맞는 구조일 것”으로 하고 그림을 삭제한다.

제9-3-2조 제3항 제4호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충전용기는 적재함의 구조가 (1)에 적합한 가스운반전용차량에 의하여 적재·운반 및 하역을 할 것. 다만, 다음의 (가) 또는 (나)에 해

(그림2) 방호벽 설치예(평면도)



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(가) 가스를 공급받는 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이 운반차량 중 적재함 최저높이로 설치되어 있거나, 컨베이어벨트 등 상·하차설비가 설치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

(나)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

제9-3-4조 제2항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품명	규격	비고
적색기	빨강색포로 한변의 길이가 40cm이상의 정방형으로 하고 길이가 1.5m이상의 깃대일 것	
휴대용손전등 메가폰또는 휴대용 확성기		다의 표중 비고란에 계기한 독성가스 이외의 가스인 때에는 휴대용 확성기를 갖출 것
로프	길이 15m이상의 것	
멍석 또는 쥬우트폰		
물통		
누출검지액	비눗물 및 적용하는 가스에 따라 10%암모니아수 또는 5% 염산	
차바퀴고정목	2개이상	
비상통신설비		

제9-3-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-3-6(보착) 제9-3-2조 제3항 제4조(1)의 규정 중 적재함 보강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전에 등록된 적재능력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